



ZEBEC YACHT TOUR

제 1 장 제백요트투어 이용 약관

제 1 조 (목적 및 적용범위)

- 1) 본 이용약관(이하 “약관”이라 한다)은 마리나 선박 (요트로 한정)운항 업 사업자와 승객간의 운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2)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, 일반 관례에 의한다.

제 2 조 (용어의 정의)

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) ”승객” 이라 함은 마리나 선박(요트로 한정)운항 업 사업자가 운영하는 마리나 선박(요트로 한정) 을 이용하는 자로 규정한다.
- 2) ”사업자”라 함은 선박(요트로 한정) 운항 사업자 및 종사원을 말한다.

-

제 3 조 (약관의 효력)

승객이 사업자의 마리나 선박(요트로 한정)을 이용

하거나 예약한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
제 4 조 (이용요금)

이용요금과 관련해서는 사업자와 승객이 협의하여 정하되 자세한 사항은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.

제 5 조 (승객의 의무)

승객은 선박(요트로 한정)에 승, 하선 및 선내에서 행동할 경우 안전운항을 위한 선내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운송인의 정당한 지시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.

제 6 조 (승객의 금지행위)

승객은 비상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
- 1) 선박 등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사업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
- 2)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 등의 장치 또는 기구들을 조작하는 행위
- 3)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
- 4) 도박, 선박(요트로 한정)운항에 방해가 될 정도의 고성방가, 난동행위 및 음란행위 등 공공질서와 다른 승객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정상운항에 방해를 주는 행위
- 5) 그 밖의 선원 등의 사업자의 구명조끼 착용지시 등 안전운항 및 위해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
- 6) 선내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, 선실 밖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해를 끼치는 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
- 7) 기타 사업자가 정상운항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행위

제 7 조 (운항의 거절 및 취소)

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운항을 거절하고 운항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
- 1) 승객이 법령 및 선내규칙을 위반하여 공공질서와 풍기문란 또는 위생상 해로운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
- 2) 승객이 정신병, 전염병, 또는 이와 유사한 증세가 있을 때
- 3) 간호인을 필요로 하는 노약자, 병약자가 간호인을 동반하지 않았거나 또는 여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
- 4) 승객이 질병, 주정, 난동 기타의 사유로 타인에게 위해 또는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정상운항에 지장을 줄 때
- 5) 제 6 조의 승객 금지 행위에 대해 사업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
- 6) 천재지변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운항에 지장이 있는 경우
- 7) 만 14 세 미만의 승객은 그 승객의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은 경우
- 8) 기타 사업자가 정상운항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

제 8 조 (휴대품의 보관책임)

승객의 휴대품은 승객 각자의 책임 하에 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그 손해에

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 9 조 (승객의 안전 주의사항)

승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별히 주의한다.

- 1) 해상에서 운항하기 때문에 바람, 파도 등으로 인하여 요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휴대폰, 각종 휴대품들을 잘 보관하여 놓치지 않도록 한다.
- 2) 승객은 선실 밖, 즉 갑판에서 움직이거나 이동할 때는 반드시 안전하게 안전 줄 또는 손잡이 등을 잡고 가능한 한 자세를 낮추어 발밑을 주시하며 서서히 이동한다.

제 10 조 (사업자의 의무)

- 1) 사업자는 승객을 승선하고 운항함에 있어 최대한 친절함과 승선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- 2) 사업자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관계보험에 가입하고 해상 안전수칙 상 필요한 관리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.

제 11 조 (사업자의 면책)

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- 1) 천재지변, 불가항력적 화재 또는 해난, 전쟁, 변란, 사변,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
- 2) 법령, 규칙 등의 집행
- 3) 기타 공권력에 의한 제한
- 4) 승객의 질병 또는 불법행위
- 5) 승객이 본 약관을 고의 또는 과실로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
- 6) 기타 사업자에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

제 12 조 (마리나선박(요트로 한정) 및 시설의 멸실, 훼손에 대한 책임)

- 1) 승객은 마리나 선박(요트로 한정) 및 시설, 기타 이에 부수하는 기구 등에 손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- 2) 승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 1 항의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 시킨 경우 승객은 사업자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 13 조 (이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)

승객은 사업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이용권을 양도, 전대 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

제 2 장 제백요트투어 회원권 약관

제 14 조 (연간 회원권 당사자)

마리나 선박(요트로 한정)사업자(이하 “갑” 이라 한다)와 회원(이하 ”을” 이라 한다)으로 등록된 자는 회원권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

제 15 조 (이용약관 준수)

상기 회원권 당사자는 제 1 장에서 열거한 이용약관

(제 1 조~제 13 조)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 16 조 (목적)

본 약관은 갑이 운영하는 마리나 선박(요트로 한정)에 대한 연간 회원권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17 조 (이용 장소)

마리나 선박(요트로 한정)의 이용은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1684 이순신 마리나 에서 이용한다. 경우에 따라 사전 공지를 통해 이용 장소는 변동이 될 수 있다.

제 18 조 (연간 회원권의 종류)

이용가능기간은 회원카드 발급일로부터 1 년으로 하되,

회원의 종류에 따라 금액 및 혜택은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.

(금액 단위 : 만원, VAT 별도)

회원 종류	회원권 금액	비 고
DIAMOND	500	
GOLD	300	

제 19 조 (연간 회원권의 선택 및 표시)

- 1) 회원권 선택:
- 2) 회원 번호:
- 3) 회원 성명:
- 4) 회원 주민등록번호:
- 5) 이용가능기간:

제 20 조 (연간 회원카드발급)

- 1) 갑은 을에게 회원 카드를 발급하며 (최초 1회에 한하여 무상) 회원카드의 재발급은 사업자가 정하는 소정의 발급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.
- 2) 회원은 회원권 사용 시 이용 전 반드시 회원카드를 제시해야 한다.

제 21 조 (회원의 자격)

을은 본 약관을 준수하기로 약정하고 소정 양식에 의거하여 가입수속 절차 후 갑의 승인을 얻어 회원권 금액을 완납한 개인 및 법인으로 정의한다.

제 22 조 (연간 회원의 기본 혜택)

회원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요트 이용 회차수가 기본 혜택으로 부여된다.

회원종류	요트투어			비고 (학교장 재량)	
	투어시간	카타마린 (40인승)	모노헬 (33인승)		
DIAMOND 10회	8 시간	1 회	1 회	10 ~ 20 인 이하	계약인원초 과시 1인당 1만원추가
	4 시간	2 회	2 회		
	2 시간	2 회	2 회		
GOLD 5회	8 시간	1 회	1 회	10 ~ 20 인 이하	계약인원초 과시 1인당 1만원추가
	4 시간	1 회	0 회		
	2 시간	1 회	1회		

제 23 조 (연간 회원의 특별 혜택)

- 1) 요트 이용 시 음료 및 간단한 다과를 제공한다.
- 2) 1박 2일 인근 섬(약 3시간 운항거리) 요트투어 이용이 가능하며, 섬 1박 2일 요트투어는 “제 22 조 (회원의 기본 혜택)의 요트투어 이용 회수 중 8시간 투어 1회와 4시간 투어 1회 이용 횟수를 소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. 코스 및 일정에 대해서는 갑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.
- 3) 제백요트학교 (화성시 전곡항 소재)에서 운영하는 요트조정면허 면제교육 1인당 7만원 교육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. (회원당 최대 5인까지 신청가능)

제 24 조 (회원의 의무)

시설 이용 시 안전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하고 안전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는 을에게 책임이 있다.

제 25 조 (요트이용 예약)

요트의 이용은 연간 회원별 약정된 회수 및 시간만큼 이용가능하며 최소 7일전 이용 시각을 사전에 예약하여야 한다.

제 26 조 (요트예약 취소)

시설 이용 예약 취소는 이용 예약일 7일전에 예약 취소를 하여야 하며 예약 취소 없이 예약 이용 시간을 경과한 경우는 해당 시설을 사용 한 것으로 간주한다.

제 27 조 (시설이용)

이용 예약 시각 30분 전에 요트 이용 장소에 도착하여 시설 이용 접수를 확인 하여야 한다.

제 28 조 (안전준수사항)

요트 이용 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하고 갑의 직원의 안전 지시를 따라야 한다.

제 29 조 (이용제한)

기상악화 및 천지재변으로 요트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

사전 이용 예약 내용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취소된 건은 재 예약을 하여야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.

제 30 조 (회원권 사용 기간)

- 1) 본 회원권 사용 기간은 본 계약서에 따라 을이 회원권 대금을 완납한 후 갑이 회원권 카드를 을에게 발송한 발송일자에서 7일 이후부터 1년으로 한다.
- 2)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이를 갑이 승인할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 31 조 (회원권 대금의 지불)

선택한 회원권을 취득함에 있어 회원권 신청자는 회원권 대금을 아래와 같이 완납하여야 한다.

1) 회원권 선택:

2) 회원권 대금: 일금 원정()

제 32 조 (회원권 대금의 입금계좌)

회원권 대금은 갑의 아래 계좌에 입금한다.

- 1) 예금주: 주식회사 제백요트학교
- 2) 입금계좌: 기업은행 483-061737-01-013

제 33 조 (회원권 대금의 환불 및 양도)

- 1) 본 회원권 대금은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으나, 해외이민이나 신체장애 등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환불이 가능하다.
- 2) 고객의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, 환불 시에는 6개월 이상의 회원권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.
- 3) 본 회원권은 6개월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신고하여 양도가 가능하다.
- 4) 환불요청 시 회원권 대금의 10% 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한다.

제 34 조 (지급 보증)

본 약관은 지급보증을 제시하지 않는다.

제 35 조 (분쟁 해결)

- 1) 본 약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칙에 따라 사업자와 운영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.
- 2) 본 약관과 관련하여 갑과 을 사이에 발행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인천지방법원으로 한다.

제 36 조 (약관의 시행 및 효력발생시기)

- 1) 본 약관은 약관 서명일로부터 시행하지만 회원권의 최종 효력발생 시기는 을이 회원권 대금을 갑에게 지불했을 때 발생한다.
- 2) 을이 본 계약서에 서명 후 10 일 이내 회원권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때는 본 계약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.

위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.

갑 상 호 : 주식회사 제백요트학교(여수지점)

주 소 : 전라남도 여수시 예울마루로 37-33, 2층 204호(웅천동)

사업자등록번호 : 645-85-01056

대표이사 성명 : 남 기 욱 (인)

서명일자:

을 상 호 또는 성 명 : (인)

사업자등록번호(주민등록번호) :

주 소 :

서명일자: